

「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」 일부 개정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9조부터 제52조, 국토교통부 「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」, 「군포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17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「군포시 지구단위 계획 운용지침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.

○ 주요 개정내용

- 주거지역 기준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일부 상향 조정
- 상한용적률 산정방식의 계수 조정

2024. 5. 31.

군 포 시 장

붙임 :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1부